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 미 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상레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의 여가 생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위치(안 제2조)
- 나.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민간 위탁근거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7조)
- 라.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마.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규정(안 제10조~제13조)
- 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등(안 제14조~제15조)
- 사.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수상레저안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이하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라 한다)는 구미시 임수동 382-2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체험 또는 장비대여를 위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장으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수상레포츠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활동
2.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

발 · 보급

3.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수상안전교육

4. 시민의 수상레저를 위한 편의 제공 등

5. 그 밖에 수상레저 활동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수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수탁자가 위탁 기간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철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개장시간) ①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장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개장 및 휴장) ①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매주 월요일
2. 설, 추석 연휴기간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

② 관리자는 휴장일을 미리 게시하여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장 및 휴장

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사용 종료 즉시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구미시체육회 또는 구미시장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체육회의 훈련 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다. 시장이 수상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감면한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위선양과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경기 및 행사
나.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후원하는 수상레저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및 행사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경우 제1급에서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3. 100분의 30 감면

가. 고유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4. 100분의 20 감면 :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②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시설 등이 파손되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관리자는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체험 또는 강의와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인명구조에 필요한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

구분	종목(1인 1종목 기준)	사용방법	사용자	사용료(원)
체 험	카누, 카약	1회 1시간	성 인	10,000
			청소년 · 노인	5,000
	래프팅 (용선)	1회 1시간	성인	10,000
			청소년 · 노인	5,000
	수상자전거 (페달보트)	1회 1시간	성인	7,000
			청소년 · 노인	5,000
교 육	윈드서핑, 덩기요트	1회 3시간	성인	25,000
			청소년 · 노인	20,000
	카누, 카약	1회 3시간	성인	30,000
			청소년 · 노인	25,000
	윈드서핑, 덩기요트	1회 3시간	성인	30,000
			청소년 · 노인	25,000

○ 12세 이하는 보호자 동승 조건으로 청소년 · 노인 요금을 적용함

○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 : 19세이상 65세 미만/ 노인 : 65세 이상

○ 사용료는 시설이용료 및 부가세 포함 금액임

○ 래프팅(용선) 1회 이용 단체(10명 이상)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 징수

○ 명시되지 않은 종목은 유사종목 사용료를 적용

[별표 2]

수상레포트 체험센터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유 형	반환기준
○ 관리자의 귀책사유	사용 시작 이전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및 10% 배상
	사용 시작 이후	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납부한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자 귀책사유	사용 시작 이전	납부한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 시작 이후	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사용 시작 이전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 시작 이후	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보험 등에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개정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7.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3.6.21>

□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 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구미낙동강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준공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시에서 위탁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 동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수상레저 장비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필요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 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100,524	122,824	132,928	144,959	158,915	660,150
	소계(a)	100,524	122,824	132,928	144,959	158,915	660,150
세출	공공요금	17,951	18,436	18,935	19,444	19,970	94,736
	인건비	205,287	210,829	216,520	222,369	228,371	1,083,376
	시설유지관리비	6,954	7,142	7,334	7,533	7,736	36,699
	일반관리비	11,509	11,820	12,140	12,466	12,804	60,739
	장비구입비	200,000	-	-	-	-	200,000
	소계(b)	441,701	248,227	254,929	261,812	268,881	1,475,550
총 비용(a-b)		-341,177	-125,403	-122,001	-116,853	-109,966	-815,4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441,701	248,227	254,929	261,812	268,881	1,475,550
민 간						
기 타						
합 계	441,701	248,227	254,929	261,812	268,881	1,475,550

5. 부대의견

- 세입(시설사용료) 및 세출(시설 관리 운영비)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재정 소요액도 변동이 생길 수 있음.

6. 작성자

- 안전행정국 체육진흥과 이창희(480-501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예산

- 시설사용료

(단위 : 천원)

구 분		종 목 별 이용비율	구 성 인 별 비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카누	대인	25%	55%	28,125	34,365	37,190	40,555	44,470
	소인		45%					
수상자전거 (페달보트)	대인	50%	55%	44,274	54,094	58,548	63,849	69,985
	소인		45%					
래프팅 (용선)	대인	25%	55%	28,125	34,365	37,190	40,555	44,460
	소인		45%					
계		100%		100,524	122,824	132,928	144,959	158,915

- 주) 1. 종목별 이용비율 : 대전 갑천 수상레포츠체험장 종목별 이용비율 적용
 2. 구성인원 비율 : 2013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14. 5.)
 국내 가구여행 비율 참조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계		441,701	248,227	254,929	261,812	268,881	1,475,550
인 건 비	소 계	173,066	177,739	182,533	187,466	192,527	913,331
	행정팀(1)	28,910	29,690	30,492	31,315	32,161	152,568
	교육팀(1)	27,672	28,420	29,186	29,974	30,784	146,036
	전문강사(2)	55,343	56,839	58,370	59,948	61,566	292,066
	안전요원(2)	45,547	46,776	48,038	49,337	50,669	240,367
	임시 전문강사(1)	8,554	8,784	9,022	9,266	9,516	45,142
	임시 안전요원(1)	7,040	7,230	7,425	7,626	7,831	37,152
경 비	소 계	57,126	58,668	60,256	61,880	63,550	301,480
	인적보험료	16,766	17,218	17,685	18,161	18,651	88,481
	전력비	1,400	1,438	1,477	1,516	1,557	7,388
	상하수도요금	700	719	738	758	779	3,694
	화재보험료	5,000	5,135	5,274	5,416	5,562	26,387
	시설유지관리비	3,960	4,067	4,177	4,289	4,405	20,898
	복리후생비	15,455	15,872	16,302	16,742	17,193	81,564
	세금과공과	10,851	11,144	11,446	11,754	12,072	57,267
	수리수선비	2,994	3,075	3,157	3,244	3,331	15,801
	일반관리비	11,509	11,820	12,140	12,466	12,804	60,739
장비구입비		200,000	-	-	-	-	200,000

주) 전력비, 상하수도요금, 화재보험가입, 시설유지관리비는 속초시, 상주시 등의 예산서를 참조함

소관 실 · 과		체육진흥과
입 안 자	과 장	김 종 율
	담 당	박 희 중
	담 당 자	이 창 희 (480-5014)